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4. 2. 29. 송선영 의원 등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3. 4.

다. 상 정 일 자 :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3. 14.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송선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시티투어 이용자의 노쇼(예약 후 미고지 불참)로 인한 참여율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시티투어 참가비 감면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적용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티투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 시티투어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2 제3항~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에서 운영 중인 '시티투어' 의이용료 감면 비율을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는 100%→80%로, 장애인·65세 이상의 노인은 70%→60%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시티투어 감면 비율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특정계층에 집중된 감면 혜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약 후 노쇼 등 부작용을 방지하여 효율적으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관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입 증가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4. 2. 29. 이용운 의원 등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3. 4.

다. 상 정 일 자 :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3. 14.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용운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성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4조)

나.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위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자립을 유도함으로써 느린학습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문의 표현 등이 상위법과 합치되며,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느린학습자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향후 느린학습자들이 지역 안에서 더욱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4. 2. 29. 전성균 의원 등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3. 4.

다. 상 정 일 자 :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3. 14.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전성균 의원)

가. 제안이유

○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해 화성시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이스포츠 진흥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4조)

나.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열거(안 제5조)

다.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라.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 이후 이스포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와 관심이 더욱 높아진 사항에 발맞추어, 이스포츠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시책 수립 및 대회 개최 지원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문의 표현 등이 상위법과 합치되며, 본 조례안을 통하여 향후 이스포츠 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4. 2. 29. 이해남 의원 등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3. 4.

다. 상 정 일 자 :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3. 14.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해남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00만 화성시민이 중심이 되어 ‘2027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및 ‘2027 제4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에 기여하기 위해 한시적인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추진단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추진단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사. 추진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조례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서 처음 개최 예정인 ‘2027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하여 시민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홍보를 위하여 시민추진단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시민추진단을 대규모 인원의 시민으로 구성 예정인만큼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추진단의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촉진하고, 화성시민 모두가 즐기고 함께하는 전국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4. 2. 29. 송선영 의원 등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3. 4.

다. 상 정 일 자 :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3. 14.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송선영 의원)

가. 제안이유

○ 다회헌혈자를 정의하고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헌혈장려를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다회헌혈자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1조의2)

나. 다회헌혈자에 대한 우대(요금감면)의 근거 마련(안 제5조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회헌혈자에 대하여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헌혈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화성시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자발적인 헌혈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화성시에서 운영 중인 각 공공시설물의 설치·운영에 관한 개별조례에서 다회헌혈자에 대한 공공시설물 사용료 등 감면조항을 두는 등 개정에 대한 후속절차가 수반되어야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4. 2. 29.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3. 4.

다. 상 정 일 자 :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3. 14.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보건정책과장 곽매헌)

가. 제안이유

○ 화성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수탁 기간이 2024. 6. 30.자로 만료됨에 따라「정신건강복지법」제15조,「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6조에 의거 기존 수탁기관인 행복한우리동네의원과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화성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나. 추진 필요성

○ 아동·청소년의 정신과적 질환의 조기발견과 개입으로 정신건강문제를 예방·관리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내용

○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의 기획 및 자원제공, 네트워크 구축
- 정신건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 등록·관리
-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교육 등 실시
- 학부모 및 교사,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상 교육 및 정보제공
- 마음건강체험학교 '마인드스텝센터'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동의안은,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 6.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향후 3년 간의 재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존 수탁기관인 '행복한우리동네의원' 이 관내 가족 및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상담과 맞춤형 교육, 지역사회 인식 개선 등 전문적이고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관부서의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점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향후 수요자 중심의 더욱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 제3항 및 제20조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4. 2. 29.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3. 4.

다. 상　정　일　자 :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3. 14.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정책과장 이향순)

가. 제안이유

○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을 사회보장제도 및 정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복지 전반의 서비스와 대상을 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인 화성시복지재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명칭변경에 따른 제명 및 관련 조항 정비
(안 제명, 제1조, 제4조제2호, 제4조제3호, 제4조제4호 및 제4조제7호)

나. 상위법령의 규정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적용되는 것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한 조항 삭제(안 제2조)

다. 안 제2조 삭제에 따라 안 제3조에서 약칭(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기초한 조직적인 개념의 사회보장제도와 정책에 국한되어 있던 복지’에서 ‘보다 포괄적인 복지’ 실현을 위하여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의 명칭을 「화성시복지재단」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화성시복지재단’ 으로의 명칭 변경에 맞추어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더욱 확장된 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4. 2. 29. 이용운 의원 등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3. 4.

다. 상　정　일　자 :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3. 14.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용운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수리비용 지원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활동 지원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의 표현 등이 상위법과 합치되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설치와 수리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경제적 부담·수리지원의 미흡한 체계로 필요한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활동의 참여 촉진과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4. 2. 29. 명미정 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3. 4.

다. 상 정 일 자 :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3. 14.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명미정 의원)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32조 등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 향상 및 범죄예방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 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아동보호구역의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정비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바.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조례안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 운영하고, 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 사항이 없고,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나 도시공원 주변 등의 장소에서 범죄의 예방효과를 높이고, 아이들이 사회의 주체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 평균 대비 아동 인구비율이 높은 화성시의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가칭)다함께돌봄(향남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4. 2. 29.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3. 4.

다. 상 정 일 자 :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3. 14.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아동친화팀장 최현순)

가. 제안이유

○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SOC 복합화시설인 향남문화복합센터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나. 위탁시설현황

(1) 위탁시설명: (가칭)다함께돌봄(향남2)센터

(2) 위 치: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512

(3) 시설연면적: 148.84㎡(다함께돌봄센터 전용면적)

다. 위탁사무

(1)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2)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3) 돌봄 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4) 종사자 채용·관리 및 돌봄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관리

(5)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향남문화복합센터 내에 (가칭)다함께돌봄(향남2)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향후 5년 간의 민간위탁 시행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별 균형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통한 민간위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전반적인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돌봄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측정 등 위탁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연계방안 등 점차 증가하고 있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가칭)다함께돌봄(신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4. 2. 29.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3. 4.

다. 상 정 일 자 :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3. 14.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아동친화팀장 최현순)

가. 제안이유

○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대상인 동탄2 A105블록 공동주택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나. 위탁시설현황

(1) 위탁시설명: (가칭)다함께돌봄(신동)센터

(2) 위 치: 화성시 신동 산 199-1

(3) 시설연면적: 298.5285㎡(다함께돌봄센터 전용면적)

다. 위탁사무

(1)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2)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3) 돌봄 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4) 종사자 채용·관리 및 돌봄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관리

(5)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화성시 신동 산 199-1번지에 (가칭)다함께돌봄(신동)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향후 5년간의 민간위탁 시행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별 균형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통한 민간위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4. 2. 29.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3. 4.

다. 상　　정　　일　　자 :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3. 14.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가. 제안이유

○ 화성시 거주 외국인주민 및 이주배경청소년 증가로 다문화·외국인 청소년 관련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다문화·외국인 청소년 지원을 위한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명칭 및 위치(안 제3조)

나.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시설 및 기능(안 제4조)

다.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관리(안 제5조,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조례안은, 화성시 내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센터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이주가 '차별'이 아닌 '성장의 잠재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센터의 설치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센터가 봉담읍에 설치 예정인 만큼, 관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거주 권역에 상관없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4. 2. 29.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3. 4.

다. 상　　정　　일　　자 :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3. 14.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가. 제안이유

○ 한부모가족에게 주거지원을 통한 안정된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영중인 화성시 한부모가족복지지설 「로뎀의 집」의 위·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법인을 선정하고자「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관리·운영: 시설관리, 조직운영 전반

○ 실시사업

- 심리상담프로그램 : 심리검사, 개별심리상담, 집단심리상담
- 자립지원프로그램 : 학력취득지원, 취업(직업)교육지원, 경제교육
- 교육지원프로그램 : 부모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 교양문화프로그램 : 문화체험, 독서교실, 춘·추계야유회
- 가족강화프로그램 : 백일잔치, 돌잔치, 체험활동, 가족캠프
-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 기타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추진사업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동의안은, 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 및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 중인 화성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로뎀의 집」의 위탁기간이 2024. 6. 30.

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 간 의 민간위탁 시행을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 자녀의 건강과 교육 보장, 심리적인 치유와 상담, 자립을 위한 준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통한 민간위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가족형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 확대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시대 변화에 맞추어,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더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